

## 총 무 처

인기 01110- 1502 ( 720-4345 ) 1989. 7. 12.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국제무역 산업 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침 통보

국제무역 산업 박람회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고  
오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국제무역 산업 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침 (국무총리지시  
제 10 호) 1부 끝.

## 총 무 처 장 관

수신처 : 가, 서울특별시장

국제무역 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에 대한

인사운영지침

※ 국제무역 산업박람회 개요

가. 목적

-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상 조명 및 장래비전 제시
- 동서·남북 교역의 증진 및 제3세계와의 관계개선

나. 행사 내용

- 무역전시 : 국내전시관, 해외전시관 설치 운영
- 산업전시 : 산업전시관, 전통문화홍보관 등 설치 운영
- 문화예술축전 : 개막축제, 국제예술축제 거행

다. 개최 시기 및 장소

- 시기 : '91. 5 ~ 7월 예정
- 장소 : 충남 대덕연구단지

라. 조직 및 공무원 파견 계획

- 조직 : 4본부 7부 18과
- 공무원 파견 계획
  - 총 89명 : 2.3급 4명, 4급 11명, 5급 35명, 6.7급 39명

※ 민간분야 인력총원 : 총 211명(공채 123명, 파견 88명)

## < 인사운영 지침 >

### 1. 목 적

- 국가적 사업인 '91국제무역 산업박람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
- 국제무역 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(이하 "박람회 조직위원회"라 한다)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지침을 정함으로써
-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파견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.

### 2. 기본원칙

- 소속장관은 인력관리상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.
- 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.

### 3. 적용대상

-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,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(국가적 사업수행을 위한 파견)에 의거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

### 4. 인사우대 기준

#### 가. 파견

공무원파견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거 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소속공무원에 대한 파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은 지체없이 적격자를 선정하여 파견승인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.

#### 나. 근무성적 평정

##### ○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의 근무성적 평정

- 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공무원이 적용받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평정서식<sup>1</sup>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
-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정기평정일 후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.

##### ○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성적 평정

-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시 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송부한 근무성적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 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소속기관 동일직급의 등등 경력차보다 불리하게 평정할 수 없음.

#### 다. 승진심사시 유의사항

- 파견공무원이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승진요건을 갖추고 승진임용 배수 범위내에 있을 경우, 파견을 이유로 승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.

#### 라. 파견공무원의 복무

- 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중 위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야 함.

- 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파견 근무중인 공무원이 파견기간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체없이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, 원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당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.

#### 마. 파견공무원의 복귀대책

- 소속장관은 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종료후 복귀하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파견 공무원의 보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- 파견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능력과 근무실적 및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우선적으로 보직 해야 함.

#### 5. 행정사항

##### 가. 지침의 적용시기

- 1989. 7. 12 일부터 적용함.
- 다만, 근무성적평정은 '89. 6. 30부터 적용하되 이 지침시행일전에 당해 직급의 근무성적평정이 확정된 경우(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완료한 경우)에는 다음 정기평정시부터 적용함.

##### 나. 사후관리

- 각급 기관의 장은 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승진,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운영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그 이행여부를 지도, 점검하여 그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.